LEGAL UPDATE

디지털금융센터

Nov. 2026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주요 Q&A

1. 법안 개요

Q.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자산법")의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현행 체계는 자금세탁 방지(특정금융정보법)와 이용자 보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로 이원화되어, 산업과 시장 측면의 접근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① 업종의 기능별 세분화, ② 은행권 과반 컨소시엄부터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③ 국내 ICO 허용, ④ 거래소 주식소유 제한, ⑤ 해킹·전산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입니다.

Q.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당국은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디지털자산법에 흡수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문 체계는 법안 원문 공개 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디지털자산업

Q.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새로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당국은 법안에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금융위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영업을 종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영업 종료 30일 전에 공고하고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 시 이용자 자산의 이전방안 등 이용자 보호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3. 거래소(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 주식소유 제한

Q. 거래소 주식소유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원칙은 20%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허용할 예정입니다.

Q. '금융위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이며,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되나요?

- 당국은 승인 대상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전자금융업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전자금융업자가 대주주인 거래소의 경우 34% 예외의 적용 여부에 따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에서 승인 대상 및 승인 요건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유예기간은 얼마나 되며,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기존 거래소와 신규 거래소 모두 법 시행일이 아니라 거래소 지정 이후부터 3년간 적용이 유예되며, 중소형 거래소는 3년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 최대 6년입니다.
  - 당국은 중소형 거래소 기준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며, 하위규정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유예기간 만료 시 초과지분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의 명시적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만 당국은 초과 보유가 법령 위반 상태로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유예기간 내 초과지분 정리를 전제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유예기간은 법 시행일이 아니라 거래소 지정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기존 거래소는 '매매·중개·보관업 인가 → 플랫폼운영자 지정 → 3년(중소형 거래소는 최대 6년) 유예' 순서로 일정을 역산하여 지분 정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초과 보유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매각명령은 없나요?

-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현재 법안에 매각명령 규정은 없으나, 초과 보유는 법령 위반 상태이므로 해소되어야 하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초과 보유 상태의 해소 기한과 절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의결권 제한 외에도 초과 보유 상태 자체의 해소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므로, 의결권 제한을 감수하고 초과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Q. 특수관계인, 우호지분, 공동창업자 지분도 합산되나요?

- 당국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여 검토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우호지분 포함 여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공동창업자 지분 합산 여부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습니다.

Q. 지주회사(홀딩스) 체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래소를 100% 자회사로 두어야 하나요?

- 당국은 법령상 거래소의 대주주와 주주를 기준으로 소유분산 여부를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주회사 자체가 거래소의 주주로서 소유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지주회사의 주주까지 합산되는지는 시행령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거래소처럼 레버리지 상품 등도 허용되나요?

- 당국은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의 범위는 지분 제한과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며, 해외 거래소의 상품 구성은 지분 규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의 범위는 지분 제한과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레버리지·파생상품 등의 허용 여부는 이번 제정안 단계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디지털자산 발행(ICO)

Q. 국내 ICO는 허용되나요? 투자자 보호장치는 무엇인가요?

-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ICO가 허용됩니다. 발행인등(또는 이를 주선하는 매매·중개업자)은 디지털자산백서를 금융위에 신고하고, 금융위는 중요사항 누락 등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수리·공시 후 숙의기간(예: 7일)을 거쳐 취득권유가 허용됩니다. 백서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엄격한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 당국은 투자자 보호는 충분한 공시를 통해 확보하며, 제정안에 투자금액 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백서 등 공시서류를 심사한 후 신고를 수리하며, 중요사항 및 첨부서류 누락 등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위 보도자료는 각주에서 "EU(MiCA) 등도 백서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질적 심사까지는 요구하지 않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국내 심사도 백서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보다는 기재 누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심사 범위와 관계없이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공시의무주체에게 남으므로, 발행인등은 백서 작성 단계부터 정확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5. 스테이블코인(디지털지급토큰)

Q.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발행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 하나의 통화가치에 준거하여 안정적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주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으로, 법률상 "디지털지급토큰"으로 규정됩니다. 발행업자는 주주구성 요건,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임원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은행 과반 컨소시엄은 무엇이며, 기술기업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나요?

-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며, 구체적 주주구성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인가 시 컨소시엄의 혁신성을 심사하여 핀테크·기술기업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당국은 기술기업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안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국이 든 예시에 따르면 은행 4곳이 각 15%(합계 60%), 핀테크가 30%, 기타 주주가 10%를 보유하는 경우 핀테크가 최대주주가 됩니다.
  - 한편 은행법상 은행의 다른 회사 출자한도는 원칙적으로 15%입니다(은행법 제37조 제1항).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 등에 대한 은행의 출자한도와 관련하여, 당국은 현행 기준은 15%이나 변경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감안하면 당국이 든 예시(은행 4곳 각 15%)는 현행 은행법 범위 내에서 설계된 구조로서 실무상 컨소시엄은 복수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Q. 발행업자 인가와 발행 승인을 따로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발행업자는 발행량·발행한도, 준비자산 관리, 상환업무 등을 담은 발행계획서를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발행업자 인가는 업자 자체를, 발행 승인은 기술과 발행량을 별도로 보는 것으로, 업자 리스크와 발행 리스크를 각각 심사하기 위해 나누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Q. 테더(USDT), 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 본국에서 충분한 감독을 받는 외국 발행업자는 국내 지점 설립, 영업기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 디지털지급토큰은 금융위에 신고하면 국내 유통이 허용됩니다.
  - 발행계획이 승인·신고되지 않은 디지털지급토큰은 거래소의 거래지원(상장), 디지털자산업자의 매매·중개·보관 등 취급이 금지됩니다. 외국 발행업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규제 논의 등을 고려하여 준비자산 일부를 국내 은행에 보관·운용하도록 규율할 계획이 있습니다.
  - 당국은 신고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테더 마켓의 유지 여부는 법안 내용이 구체화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따라서 USDT 마켓 등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법 시행 시점에 해당 토큰이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마켓 운영 및 보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 있으므로, 취급 중인 외화 스테이블코인 목록과 발행인의 신고 가능성, 시행령상 신고 주체·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은 해외 발행 토큰도 지정 대상인가요?

- 금융위는 발행잔액 1조원 이상의 디지털지급토큰 중에서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자기자본 추가 적립, 준비자산 유동성 관리 강화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한국은행은 자료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을 가집니다. 지정 등은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로 구성되는 디지털지급토큰 관련 위원회에서 협의합니다.
  - 당국은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대상에 국내외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 국내외 제한이 없다면 국내 유통을 위해 신고한 해외 대형 스테이블코인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행잔액 1조원 기준을 국내 발행·유통잔액으로 볼지 전 세계 발행잔액으로 볼지에 따라 지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시행령상 산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외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개정 계획이 있나요?

- 당국은 별도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번 법안이 논의되면 재정경제부가 외국환거래법 관련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결제 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디지털자산법과 별도로 외국환거래법 정비 동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준비자산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발행업자는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준비자산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준비자산은 압류와 상계가 금지되어 발행업자의 도산 위험과 절연됩니다. 발행업자의 인가취소·파산,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발행·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준비자산을 보유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 준비자산은 연동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보유자는 액면가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발행업자는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당국은 준비자산의 구체적 종류는 시행령에서 예시할 예정이며, 준비자산관리기관은 은행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기관도 가능하도록 시행령에서 다루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이 금지되므로, 리워드·캐시백 등 실질적으로 이자와 유사한 혜택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보도자료는 이자 지급 금지 주체를 '발행업자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거래소 등도 포함되는지 법안 원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샌드박스 계획이 있나요?

- 당국은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로 예정되어 있으나, 발행업자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발행 시점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 시행 전 샌드박스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 법 시행 후 발행업자 인가와 발행계획서 승인을 순차로 받아야 하므로, 실제 발행은 법 시행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보입니다.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는 은행·핀테크는 시행령상 주주구성 요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컨소시엄 구조와 혁신성 심사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은행 제휴 방식은 유지되나요?

- 당국은 실명계좌 등 특금법 관련 사항은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안 발의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은행 제휴 방식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 현행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 본문).
  - 실명계좌 관련 사항이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디지털자산법 시행 후에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동법상 인가·지정과 별도로 특금법상 신고 요건으로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계속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은행 제휴 방식은 FIU의 별도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 이용자 보호, 시장 질서 및 기타

Q. 디지털자산업자의 해킹이나 전산사고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하면 디지털자산업자가 이용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약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용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전산 안전성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당국은 무과실책임과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하였으며 큰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약관에 규정된 경우'와 관련하여,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약관규제 등이 디지털자산업자에게도 도입될 예정이고, 약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약관 관련 법령상 규율도 적용되므로, 약관으로 이용자 책임 범위를 넓게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안 원문 및 하위규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Q. DAXA가 담당하던 자율규제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매매체결, 거래지원(상장), 이상거래 감시 기능은 공적 규제로 전환되어, 거래소는 이에 대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금융위는 업무규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국은 법정협회 설립 근거는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DAXA가 법정협회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답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 위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법령에서 직접 규율되고 금융위가 업무규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 DAXA 공동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거래지원(상장)·거래지원 종료 절차는 거래소별 업무규정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시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거래소는 거래지원 전 거래지원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고, 발행·유통량 변경, 해킹 등 중요정보는 즉시 공시하여야 합니다. 백서·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거짓기재·누락이 있으면 공시 의무주체(임원 포함)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고, 금융위의 조사권, 과징금,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됩니다.
  - 신고 수리된 백서 등은 (가칭)디지털자산 통합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정보의 중요성 기준에 따라 법정공시(금감원)와 자율공시(협회)로 구분됩니다. 당국은 통합공시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고 금감원과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Q. 불공정거래 규제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 불공정거래 적용 범위는 거래지원 중인 디지털자산뿐 아니라 거래지원 심사 중인 디지털자산까지 확대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시세조종도 매매뿐 아니라 교환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공정거래 관련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 의결로 지급정지(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또는 디지털자산거래 금지(최대 5년) 조치를 할 수 있고, 자진신고자 형벌·과징금 감면 및 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 거래지원 심사 중인 디지털자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거래소와 발행인등은 거래지원 예정 여부 등 심사 단계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관리하고, 퇴직 후 1년 이내 임직원에 대한 정보관리 절차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법인의 코인 거래는 어떻게 규율되나요?

- 당국은 법인의 코인 거래는 법률이 아닌 추후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안 논의 과정과 연계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Q. 디파이, 예측시장, 파생상품은 허용되나요?

- 당국은 디파이와 예측시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않으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검토하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파생상품 등 거래 가능 상품의 범위는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 국회 논의 상황과 통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당국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채널로 협의해 왔으나, 법안 통과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통합법 9건, 스테이블코인법 3건 등 의원안 12건이 발의되어 있어 정부 제정안과의 병합·조정이 예상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